|  |  |  |
| --- | --- | --- |
| **《폐기 플라스틱 가공활용에 따른 오염 방지, 정비 관리규정》반포와 관련한 공고**  환경부, 국가 발전 및 개혁위원회, 상무부 공고 2012년 제55호  《쇼핑용 비닐주머니 생산, 판매, 사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국무원 판공청의 통지》(國辦發[2007]제72호),《완벽하고 선진적인 폐기상품, 중고상품 회수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대한 국무원 판공청의 의견》(國辦發[2011]제49호)을 관철하여 폐기 플라스틱 가공활용에 따른 오염 방지, 정비를 강화함으로써 인민대중의 건강을 강화하고 환경안전을 보장하며 순환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 발전 개혁 위, 상무부에서 공동으로《폐기 플라스틱 가공활용에 따른 오염 방지, 정비 관리규정》을 제정하였다. 이 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집행한다.  상기와 같이 공고한다.  별첨: 폐기 플라스틱 가공활용에 따른 오염 방지, 정비 관리규정  환경보호부  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2012년 8월 24일  붙임:  **폐기 플라스틱 가공활용에 따른 오염**  **방지, 정비 관리규정**  **제1조** 《쇼핑용 비닐주머니 생산, 판매, 사용 제한하는 것에 대한 국무원 판공청의 통지》(國辦發[2007]제72호),《완벽하고 선진적인 폐기상품, 중고상품 회수시스템을 구축할 데 대한 국무원 판공청의 의견》(國辦發[2011]제49호)을 관철하여 폐기 플라스틱 가공활용에 따른 오염 방지, 정비를 강화함으로써 인민대중의 건강을 강화하고 환경안전을 보장하며 순환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폐기 플라스틱 가공활용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반드시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 규정에서 폐기 플라스틱 가공활용이라 함은 국내에서 회수한 폐기 플라스틱(공업 자투리, 폐기 비닐 병, 비닐 포장재 및 기타 비닐제품, 농업용 박막 등 포함)과 비준을 거쳐 국외에서 수입한 각종 폐기 플라스틱 등을 분류, 세척, 선으로 늘이거나 과립상태로 만들거나 또는 폐기 플라스틱을 플라스틱 재생제품이나 제품으로 가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폐기 플라스틱 가공활용 시에는 국가 관련 산업정책의 규정 및《폐기 플라스틱 회수와 재생이용에 따른 오염통제 기술규범》에 부합하고 2차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주민구역에서의 폐기 플라스틱 가공활용을 금지한다. 폐기 플라스틱을 이용한 두께 0.025㎜ 이하의 비닐 쇼핑주머니와 두께 0.015㎜ 이하의 비닐주머니 생산을 금지한다. 폐기 플라스틱을 활용한 식품용 비닐주머니 생산을 금지한다. 위험 폐기물 경영허가증이 없이 위험 화학물이나 농약 등에 오염된 비닐 포장재, 일회용 폐기 의료 플라스틱제품(점적주사용기, 혈액주머니 등)을 포함한 폐기 플라스틱 위험물 회수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환경보전요구에 부합하는 오수 처리시설 없이 폐기 편직물의 과립제조, 도자기 원료세척, 폐기 플라스틱 코팅물 제거, 서슬 분류 등 가공활동을 금지한다.  **제4조** 폐기 플라스틱 가공활용에 종사하는 단위에서는 폐기 플라스틱 가공활용과정에 산생한 쓰레기, 여과망을 환경에 대한 무해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며 환경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단위에 맡겨 처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한다.  폐기 플라스틱이나 그 가공활용과정에 산생한 쓰레기와 여과망을 노천에서 소각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5조** 수입 폐기 플라스틱 가공활용기업은《고체 폐기물 수입 관리방법》및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고체 폐기물과 폐기 플라스틱 수입 시의 환경관리에 대한 환경부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사용하였고 세척하지 않은 폐기 플라스틱의 수입을 금지한다.  수입한 폐기 플라스틱의 전부나 일부를 수입허가증에 명시된 활용기업 이외의 단위나 개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며 여기에는 수입 폐기 플라스틱 세척의 여타기업 대행을 포함한다.  수입 폐기 플라스틱 분류과정이나 가공활용 과정에 발생한 잔여 폐기 플라스틱은 무해 활용하거가 무해 처리해야 하며 상기 잔여 폐기 플라스틱을 세척하지 않고 처리하거나 직접 매출하는 것을 금지한다.  수입파지 가공활용기업에서는 수입파지 중의 폐기 플라스틱을 무해 활용하거나 무해 처리해야 하며 수입파지 중의 폐기 플라스틱을 세척하지 않고 직접 매출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6조** 수입 폐기 플라스틱 가공활용 기업이 국가에서 수입을 금지하거나 환경통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폐기 플라스틱을 수입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통과세관, 검사검역부서 및 소재지 환경부서에 보고하고 관련 처리활동에 협조해야 한다.  **제7조** 폐기 플라스틱 가공활용 집산지에는 폐기 플라스틱 가공활용 집산으로 산생한 쓰레기와 여과망의 집중 회수처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 폐기 플라스틱 가공활용 집산지에서는 폐기 플라스틱 가공활용 개체들을 단지에 집중시켜 관리하고 폐기 플라스틱 가공활용 과정에 산생한 폐수나 기체, 고체폐기물을 집중하여 처리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여건이 갖추어진 페기 플라스틱 가공활용 집산지에서는 국가󰡒城市鑛山(순환이용 자원)󰡓시범기지 건설 활동을 신청하고 폐기 상품이나 중고 상품 회수 시스템 건설시범활동을 신청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제8조** 성급의 환경 주관부서와 상무 주관부서에서는 조사를 거처 합격한 폐기 플라스틱 가공활용기업의 명부를 작성하고 조사 확인 과정에 문제점을 발견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리하는 동시에 그 결과를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2013년 1월 1일부터 환경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기업은 폐기 플라스틱 수입을 인가하지 아니 한다.  **제9조** 이 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关于发布《废塑料加工利用污染防治管理规定》的公告**  环境保护部、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商务部公告 2012年 第55号  　　为贯彻落实《国务院办公厅关于限制生产销售使用塑料购物袋的通知》（国办发〔2007〕72号）、《国务院办公厅关于建立完整的先进的废旧商品回收体系的意见》（国办发〔2011〕49号），加强废塑料加工利用的污染防治，保护人民群众身体健康，保障环境安全，促进循环经济健康发展，环境保护部、发展改革委、商务部联合制定《废塑料加工利用污染防治管理规定》。此规定自2012年10月1日起执行。  　　特此公告。    　　附件：废塑料加工利用污染防治管理规定    环境保护部  发展改革委  商务部  2012年8月24日    附件：    **废塑料加工利用污染防治管理规定**    **第一条**　为贯彻落实《国务院办公厅关于限制生产销售使用塑料购物袋的通知》（国办发〔2007〕72号）、《国务院办公厅关于建立完整的先进的废旧商品回收体系的意见》（国办发〔2011〕49号），加强废塑料加工利用的污染防治，保护人民群众身体健康，保障环境安全，促进循环经济健康发展，制定本规定。  **第二条**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废塑料加工利用活动必须遵守本规定要求。  　　本规定所称废塑料加工利用，是指将国内回收的废塑料（包括工业边角料、废弃塑料瓶、包装物及其他塑料制品、农膜等）及经批准从国外进口的各类废塑料等进行分类、清洗、拉丝、造粒的活动；以及将废塑料加工成塑料再生制品或成品的活动。  **第三条**　废塑料加工利用必须符合国家相关产业政策规定及《废塑料回收与再生利用污染控制技术规范》，防止二次污染。  　　禁止在居民区加工利用废塑料。禁止利用废塑料生产厚度小于0.025mm的超薄塑料购物袋和厚度小于0.015mm超薄塑料袋。禁止利用废塑料生产食品用塑料袋。禁止无危险废物经营许可证从事废塑料类危险废物的回收利用活动，包括被危险化学品、农药等污染的废弃塑料包装物，废弃的一次性医疗用塑料制品（如输液器、血袋）等。  　　无符合环保要求污水治理设施的，禁止从事废编织袋造粒、缸脚料淘洗、废塑料退镀（涂）、盐卤分拣等加工活动。  **第四条**　废塑料加工利用单位应当以环境无害化方式处理废塑料加工利用过程产生的残余垃圾、滤网；禁止交不符合环保要求的单位或个人处置。  　　禁止露天焚烧废塑料及加工利用过程产生的残余垃圾、滤网。  **第五条**　进口废塑料加工利用企业应当符合《固体废物进口管理办法》以及环境保护部关于进口可用作原料的固体废物和废塑料环境保护管理相关规定。  　　禁止进口未经清洗的使用过的废塑料。  　　禁止将进口的废塑料全部或者部分转让给进口许可证载明的利用企业以外的单位或者个人，包括将进口废塑料委托给其他企业代为清洗。  　　进口废塑料分拣或加工利用过程产生的残余废塑料应当进行无害化利用或者处置；禁止将上述残余废塑料未经清洗处理直接出售。  　　进口废纸加工利用企业应当对进口废纸中的废塑料进行无害化利用或者处置；禁止将进口废纸中的废塑料，未经清洗处理直接出售。  **第六条**　进口废塑料加工利用企业发现属于国家禁止进口类或者不符合环境保护控制标准的进口废塑料，应当立即向口岸海关、检验检疫部门和所在地环保部门报告并配合做好相关处理工作。  **第七条**　废塑料加工利用集散地应当建立废塑料加工利用散户产生的残余垃圾和滤网集中回收处理机制。鼓励废塑料加工利用集散地对废塑料加工利用散户实行集中园区化管理，集中处理废塑料加工利用产生的废水、废气和固体废物。  　　鼓励有条件的废塑料加工利用集散地申请开展国家“城市矿产”示范基地建设，申请开展废旧商品回收体系建设试点工作。  **第八条**　省级环保、商务主管部门应当组织核查并公布合格的废塑料加工利用企业名单；对核查发现问题的，应当依法处理并将处理结果向社会公布。  　　自2013年1月1日起，未经环保核查合格的企业，不予批准进口废塑料。  **第九条**　本规定自2012年10月1日起实行。 |